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78
----------	-------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 의 자 : 강은미 · 장혜영 · 이은주
심상정 · 배진교 · 남인순
조오섭 · 류호정 · 용혜인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35조의6,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및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처우에”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1일 5시간부터 8시간까지, 1주 25시간부터 40시간까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급, 각

중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책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적정 인건비 기준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여부를 불문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의6제6항을 장기요양기관이 위반한 경우

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7조제1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6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6제3항을 장기요양기관이 위반한 경우

제38조제2항 중 “그 내용을”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을”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

3의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를 청
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②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④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u> ----- ----- ----- <u>국 · 공립 장기요양기관</u> <u>을 확충하여야-----.</u>
<u>④ ~ ⑥ (생략)</u>	<u>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 -----.

1. · 2. (생 략)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
원의 근로시간을 1일 5시간부
터 8시간까지, 1주 25시간부터
40시간까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
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
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
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
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한다.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
은 월단위로 책정하며 장기요
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
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적정 인건비 기준의 장기근
속 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하
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한 장기요
양기관에 근무 여부를 불문한
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
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

-----.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의6제6항을 장기요양

<신 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의4. (생략)

<신 설>

3의5. ~ 3의7. (생략)

4. ~ 8. (생략)

② ~ ⑨ (생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생 략)

기관이 위반한 경우

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
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
소 등) ① -----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35조의6제3항을 장기요양기관이 위반한 경우

3의6. ~ 3의8. (현행 제3호의5
부터 제3호의7까지와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
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
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
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인건비와 운영비
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1. ~ 3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4. ~ 9. (생략) ② · ③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한</u> <u>자</u> <u>3의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u> <u>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u> <u>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u>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